

#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발주자 확인제도 시행

정부는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업체 및 건설기계대여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3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7항 및 제68조의3 제6항을 개정하고 8월 4일부터 시행기로 했다. 이에 따라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발주자는 8월 4일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. [편집자 주]



## ■ 도입배경

-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업자 및 건설기계업자의 피해 예방

## ■ 제정 및 시행

- 제정 : 2016. 2. 3.

- 시행 : 2016. 8. 4.

\*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발주자 확인제도

- 공공공사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
- 보증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 등록관청에 행정제재 요구



## ■ 근거

–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7항 및 제68조의3제6항

### 제34조(하도급대금의 지급 등)

⑦ 발주자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제2항에 따른 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2.3.>

### 제68조의3(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)

⑥ 발주자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2.3.>

## ■ 주요내용

–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\*인 발주자는 보증서 교부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여야 함

\* (공공기관)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,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
– 확인대상 :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,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

### < 지급보증제도 개요 >

#### 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

- 원칙 :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함
- 예외 : ①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에 발주자·수급인·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② 1건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

#### ②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

- 원칙 :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함
- 예외 : ① 발주자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불에 발주자·건설업자·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② 원도급자가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③ 1건 대여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

– 행정사항 : 공공 발주자는 위 보증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 등록관청(종합 : 시·도, 전문 : 시·군·구)에 행정제재\* 요구

\* 시정명령(법 제81조), 6개월 이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(법 제82조) 